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7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원상회복 반환 명령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1. 공고명: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 명령 공시송달
- 2. 근거법규
 - 가.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제72조(변상금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3. 공고기간: 2026. 8. 28.~ 2026. 9. 11.(15일)

4. 대상자 및 점유재산

대상자		점유재산		
성명	주소	재산명	소재지	기존 허가기간
신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자매로 **	여수소호동 우체국 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호동 1210-1, 2층	2021.7.5.~ 2026.7.4.(5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호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			

- 5. 처분내용
 - 가. 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명령
 - 국유재산법 제38조 등에 의거하여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함에 따라, 본 공고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유 중인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미이행 시 조치
 - 기한 내 국유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부동산 명도소송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철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허가 만료일(2026년 7월 4일)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 완료일까지 무단점유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갱신 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계속 부과 됩니다.

6. 기타 업무문의처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